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53
----------	------

제출년월일 : 2018. 4.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 가. 2013. 7. 1. 시행 「민법」에서 행위 “무능력자”가 “제한능력자”로 변경됨(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 종래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어의상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어서 용어를 바꾸게 됨)으로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 나.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목적 조문내 단축용어 정의 삭제(안 제1조)
- 나. 발행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 우리 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에 맞게 “수입금출납원과 분임징수관”을 입회자로 지정(안 제7조)
 - 수입금출납원,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수입금출납원, 분임징수관
- 다. 개정 민법에 맞게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용어 정비(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 붙임참조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8. 2. 28. ~ 3. 20.(20일간)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2. 26. 결과, 해당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2018. 3. 5. 결과, 개선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를 “수입증지”로 한다.

제2조 중 “증지란”을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으로 납부케”를 “신용카드·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연1회”를 “연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제”를 “제조”로 한다.

제5조의 제목“(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를 “제3조에도 불구하고 증지”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영시 다음 각호”를 “인영 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입증지”를 “증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발행연월일
- 4. 계기 인영번호

제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을 “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한”으로, “게시판”을 “시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을 “제6조에 따라 제조된”으로,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을 “분임징수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 금고”를 “구·군 금고”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민원담당공무원중”을 “민원담당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9조 중 “수입증지”를 각각 “증지”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판매인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체결신청서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입증지판매”를 “증지판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하여는”을 “위하여”로, “별표2에 의한”을 “별표 2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할 수 있는 수량의”를 “부족하지 아니하도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일시적”을 “판매인이 일시적”으로, “2일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2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명의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일전에 수입증지판매인 계약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을 “계약해지 2일 전까지 증지판매 계약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15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으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인이나 그 밖의”로, “의거 지체없이”를 “따른 증지 판매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변경하였을 때”를 “변경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소가 불명한 때”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판매인이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제17조제1항 중 “매수하고자 할”을 “매수하려는”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을 “별지 제3호서식의 증지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을 “별지 제4호서식의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고에서는”를 “시 금고는”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의”로, “받고 전도하여 판매케”를 “받고 증지를 교부하여 판매하게”로 한다.

제18조 중 “판매인”를 “시장은 판매인”로, “오손 또는 훼손한”을 “오염 또는 훼손하여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금고”를 “시 금고”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판매인은 증지의 판매수입금을 금고 소재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한 정산일로 한다.

②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수료를 증지로써 수령한 관계공무원은 지체 없이 이를 붙인 지면과 증지의 문체에 걸쳐 명확하게 소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환매청구서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 금고에서는”을 “시 금고는”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판매인은 보유하고 있는 증지가 오염·훼손 등으로 판매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금고 또는 구·군금고에서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를 “시 금고 또는 구·군 금고는 제2항의 불출증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장부”를 “증지수불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 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를 “별지 제5호서식의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금고에서는”를 “시 금고는”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3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u>수입증지</u> (이하 “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수입증지</u> ----- ----- -----.
제2조(정의) <u>증지</u> 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해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2조(정의) <u>수입증지</u> (이하 “증지”라 한다)란 --- ----- ----- -----.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u>신용카드, 교통카드 등</u> 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u>규칙</u> 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신용카드·교통카드</u> 등으로 납부하게 -----. <u><삭 제></u>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생 략)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회계연도</u> 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u>연1회</u>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u>조제</u> 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u>회계연도</u> ----- ----- <u>연 1회</u> ----- -----. ③ --- <u>제조</u> ----- --.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수입증지</u>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u>의하여</u>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u>인영시 다음 각호</u> 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u>수입증지</u> 요금 2. (생 략) 3. <u>발행년월일</u> 4. <u>계기인영번호</u> ③ 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때에는 계기사용의 <u>인가서</u> 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보 또는 <u>게시판</u> 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 ----- 제3조에 <u>도 불구하고 증지</u> ----- ----- <u>따라</u> -----. ② ----- ----- <u>인영 시 다음 각 호</u> -----. 1. <u>증지</u> --- 2. (현행과 같음) 3. <u>발행년월일</u> 4. <u>계기 인영번호</u> ③ --- <u>제2항에 따른 인가</u> 를 한 ----- ----- <u>시 홈페이지</u> 에 -----.

현행	개정안
<p>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u>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u> 입회하여야 한다.</p> <p>② 인수한 증지는 시 금고 또는 구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제조된 ----- ----- <u>분임징수관이</u> ----- -----.</p> <p>② -----<u>구·군 금고</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판매인 계약등) ① ~ ③ (생략)</p> <p>④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 직장금고는 <u>민원담당공무원중</u> 판매책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8조(판매인 계약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민원담당공무원 중</u> ----- -----.</p>
<p>제9조(판매인의 요건) <u>수입증지</u>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u>수입증지</u>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p>	<p>제9조(판매인의 요건) <u>증지</u> ----- ----- <u>증지</u> ----- -----.</p>
<p>제10조(판매인 계약체결신청) ① <u>판매인이</u>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약체결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u>수입증지 판매</u> 계약을 체결(별지 제2호서식)하였을 때에는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0조(판매인 계약체결신청) ① <u>판매인이</u>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체결신청서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u>증지판매</u> ----- -----.</p>
<p>제11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u>별표2에</u>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판매인은 민원의 수요에 <u>응할 수 있는</u>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p>	<p>제11조(판매인의 의무) ① ----- -- <u>위하여</u> ----- <u>별표 2의</u> -----.</p> <p>② ----- <u>부족하지 아니하도록</u> ----- -----.</p>
<p>제12조(판매인의 명의변경 계약해지신청) ① <u>일시적</u>(10일이내)으로 판매인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u>2일전</u>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판매인의 명의변경 계약해지신청) ① <u>판매인이 일시적</u>----- ----- <u>2일 전까지</u> <u>별지 제8호서식의</u> <u>명의변경신고서</u>-----.</p>

현행	개정안
<p>② 판매인이 증지판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u>2일전에</u> 수입증지판매인 계약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5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10조에 의한 판매인 계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6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u>의거 지체없이</u>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매인이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 2. 판매인이 사망한 때 3. 판매인이 30일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한 때 4.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 <p>제17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지취급 공무원이 증지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증지 수령증을 받고 전도하여 판매케 할 수 있다.</p> <p>제18조(변상책임) 판매인 또는 보관자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u>오손 또는 훼손한</u>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p> <p>제20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u>금고는</u>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 <u>계약해지 2일 전까지 증지판매 계약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u> -----.</p> <p>제15조(판매인의 승계) ----- <u>그 밖의</u> ----- ----- ----- <u>따라</u> ----- -----.</p> <p>제16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인이나 그 밖의</u> ----- <u>따른 증지 판매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변경한 경우</u> 2. ----- <u>경우</u> 3. ----- <u>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u> 4. <u>판매인이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u> <p>제17조(증지 취급 및 매수) ① ----- <u>매수하려는</u> ----- <u>별지 제3호서식의 증지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u>-----.</p> <p>② ----- <u>별지 제4호서식의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u> -----.</p> <p>③ <u>시 금고는</u> ----- -----, ----- ----- <u>별지 제7호서식의</u> ----- ----- <u>받고 증지를 교부하여 판매하게</u> ----- -----.</p> <p>제18조(변상책임) <u>시장은 판매인</u> ----- ----- <u>오염 또는 훼손하여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u> -----.</p> <p>제20조(판매인 수수료) ----- ----- ----- <u>시 금고는</u> ----- -----.</p>

현행	개정안
<p>제21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u>제5조의 규정</u>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한 정산일로 한다.</p> <p>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21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판매인은 증지의 판매수입금을 금고 소재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한 정산일로 한다.</p> <p>②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한다.</p> <p>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24조(증지의 소인) ①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제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p>	<p>제24조(증지의 소인) ① 수수료를 증지로서 수령한 관계공무원은 지체 없이 이를 붙인 지면과 증지의 문제에 걸쳐 명확하게 소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p>
<p>제26조(증지의 환매) ① (생략)</p> <p>② 판매인은 제1항에 따른 환매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한다.</p> <p>③ (생략)</p> <p>④ 시 금고에서는 제3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0조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p>	<p>제26조(증지의 환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별지 제3호서식의 환매청구서를 작성하여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 금고는 -----.</p>
<p>제27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 증지로서 오염, 훼손등으로 판매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면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③ 시금고 또는 구·군금고에서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27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은 보유하고 있는 증지가 오염·훼손 등으로 판매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 금고 또는 구·군 금고는 제2항의 불출증에 따라 -----.</p>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장부비치 및 검사) ① 판재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28조(장부비치 및 검사) ① ----- --- <u>증지수불부</u>----- ---.</p> <p>② ----- <u>소속 공무원</u>----- -----.</p>
<p>제29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p>	<p>제29조(출납정리) ----- <u>별지 제5호서식의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u>, ----- -----.</p>
<p>제30조(보고) ①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p> <p>② (생략)</p>	<p>제30조(보고) ① <u>시 금고는</u> ----- ----- <u>알려야</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2조(규칙) ----- <u>필요한</u> ----- -----.</p>

관 계 법 령

□ [민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p> <p>②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p> <p>③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p>	<p>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u>제한능력자</u>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p> <p>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7. 일부개정></p>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재정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같음할 수 있다.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같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 2. 28 규칙 제 2446호)<개정 2014.12.22., 2017.3.2.>

1. 본청 <개정 2014.12.22., 2017.3.2.>

가. 회계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나. 징수관 - 기획조정실장

다. 분임징수관 - 세정담당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라.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 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5.11.30.>

자. 부채관리관 - 소관 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 카.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 타.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사무관,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담당사무관
-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사무업무담당사무관
- 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제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박희문